2016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 선출 방법

RI 의 입법기구인 규정심의회는 매 3 년마다 개최됩니다. 규정심의회는 RI 의 정관 문서들을 개정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모든 지구는 입법안을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지구 대의원을 선출하여, 1 주일간 개최되는 규정심의회에 파견해야 합니다. 다음 규정심의회는 2016 년 4 월 중,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의원 선출 일정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은 심의회 개최 2 년 전에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6 규정심의회 대의원들은 **2014 년 6 월 30 일까지** 선출되어야 합니다.

대의원 명단 제출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이 선출되면, 그 명단을 "2016 규정심의회 대의원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RI 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3 년 9 월 중에 "2016 규정심의회 대의원 양식" 링크가 모든 2013-14 지구총재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지구총재는 이 링크를 통해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지구총재 임기 연도, 그리고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의 경험 여부 등을 RI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의 정보가 RI 에 제출되면, 해당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에게도 지구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2016 (교체) 대의원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지구총재가 "2016 규정심의회 대의원 양식" 링크를 받아보지 못했을 경우, 규정심의회 부서(council_services@rotary.org)로 이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의원들을 위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로타리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대의원의 이메일로 보내집니다. 따라서 대의원들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경우, 소속 클럽의 총무에게 이를 업데이트 시켜줄 것을 요청하거나, 변경된 이메일 주소를 data@rotary.org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대의원 자격 (RI 세칙, 제 8.020.항)

규정심의회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출 당시, 지구총재로서 전체 임기를 완전히 끝낸 전총재
- 대의원의 자격과 임무 그리고 책임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로타리안
- 대의원의 임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
-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으로서) 규정심의회 참가 횟수가 3 회 미만인 로타리안
- 심의회 전 일정에 참석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회원

외국어 구사 능력: 2016 규정심의회는 한국어를 비롯, 다음 6 개 국어로 동시통역됩니다.

- 영어
- 프랑스어
- 일본어
- 한국어
- 포르투갈어
- 스페인어

아울러 대부분의 규정심의회 자료들도 상기 언어로 번역됩니다. 대의원들은 규정심의회 개최 연도에 한국어로 번역된 입법안 책자를 비롯해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규정심의회 참가 횟수 제한: 로타리안들이 대의원으로서 규정심의회에 참가할 수 있는 횟수는 최고 3 회까지입니다. 따라서, 2016 규정심의회 대의원 후보자 자격은 지금까지의 규정심의회 참가 횟수가 2 회까지인 로타리안이어야 합니다. 지구는 입법 절차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의원으로 선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규정심의회 경험이 있는 그룹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모두를 고려하여 대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지구 대의원 선출 (RI 세칙, 제 8.050., 8.060.1., 8.070., 그리고 13.020.항)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은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구가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 연차 지구대회(RIBI 의 경우 지구 심의회)나 지구 우편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우표투표는 지구대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하였거나 혹은 RI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16 규정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은 반드시 2013-14 로타리 연도 중에 선출되어야 합니다.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 (RI 세칙, 제 8.050.항): 지명위원회에 의한 대의원 선출은 RI 세칙 제 13.020.항에 규정된 지구총재 지명 절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 후보자는 지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을 채택하지 못했을 경우: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였으나, 지명위원회 위원 선발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지구는 현재 지구 내 클럽 회원으로서 위원으로 봉사할 의향이 있는 전 총재들을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의원 후보자는 지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구대회에서의 대의원 선출 (RI 세칙, 제 8.060. 및 15.050.항):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지구들은 지구대회(RIBI 의 경우 지구 심의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3-14 지구대회(RIBI 의 경우, 2013 년 10 월 1 일 이후에 열리는 지구 심의회)에서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모든 클럽은 소속 클럽과는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지구 로타리안 1 명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클럽 회장과 총무가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 서명하여 지구총재에게 우송하면 됩니다. 지구총재는 지구대회 선거를 위해 이를 선거인단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만일 타 클럽 소속의 회원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 해당 클럽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구총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는 RI 세칙 제 15.050.항에 기술되어 있는 지구대회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클럽의 선거인은 가장 최근의 반기보고서에 나타난 클럽 회원 숫자(1 월 1 일/7 월 1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어느 클럽이든지 최소한 1 명의 선거인을 지구대회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회원수가 25 명 이상인 클럽의 경우, 추가 회원 수 25 명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1 명의 선거인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클럽 회원 수에 따른 선거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럽 회원 수	**클럽 선거인 수**
37 명까지	1
38 명에서 62 명까지	2
63 명에서 87 명까지	3
88 명에서 112 명까지	4
113 명에서 137 명까지	5
138 명에서 162 명까지	6
163 명에서 187 명까지	7
188 명에서 212 명까지	8

선거인은 반드시 지구대회에 참석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또한 클럽의 선거인들은 투표 시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에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일 클럽 선거인의 투표가 분산될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투표 수의 과반수(50% +1 이상)를 얻은 후보자가 지구 대의원이 됩니다. 대의원 후보자가 두 사람인 경우, 차점자가 교체 대의원이 됩니다. 교체 대의원은 선출된 대의원이 봉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대의원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대의원 후보자가 세 사람 이상인 경우, 단일이양식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점자가 대의원으로, 차점자가 교체 대의원으로 선출됩니다.

우편투표에 의한 선출 (RI 세칙, 제 8.070.항): 경우에 따라, 지구대회(RIBI 의 경우 지구 심의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지구대회 결의에 의해 또는 지구총재가 RI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회에서 우편투표 여부를 결정할 경우, 지구대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선거인의 과반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편투표는 지구대회가 개최된 후, 1 개월 이내에 단일이양식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구총재가 RI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구 우편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RI 한국 지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

임기를 끝낸 전총재가 한명도 없거나 대의원 후보자가 단지 1 명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단일 후보자(RI 세칙, 제 8.060.4.항): 대의원 후보자가 1 명이면 투표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후보자를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공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교체 대의원을 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구총재가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지명하면 됩니다.

후보자가 없는 경우(RI 세칙, 제 8.020.2.항): 후보자 자격 가운데 하나인 임기를 완전히 끝낸 전총재가 없는 경우, 현 총재나 차기총재 혹은 총재 임기 1 년을 다 마치지 아니한 로타리안 등이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총재가 이를 증명하고 RI 회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 지구는 한국지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교체

규정심의회 대의원은 선출직이므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교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이 사퇴할 경우에만 교체 대의원이 대의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교체 대의원 역시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없거나, 교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현 총재가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현 총재는 전총재를 지명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의원 선출 당시의 지구총재나 차기총재를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전총재가 1 명도 없을 경우, 지구총재는 자격을 갖춘 지구 클럽의 로타리안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의 의무 (RI 세칙, 제 8.030.항)

규정심의회 대의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럽의 심의회 입법안 작성을 도와준다.
- 지구대회 그리고/또는 기타의 회합에서 제안된 입법안에 대해 토의한다.
- 지구 로타리안들의 의견을 파악한다.
- 규정심의회에 제출된 모든 입법안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규정심의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다른 대의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RI 의 입법안 제정자로 공정하게 활동한다.
- 규정심의회 전 기간 동안 심의회에 참석한다.
- 규정심의회 폐회 후, 규정심의회 내용을 지구에 보고한다.
- 클럽들의 차기 규정심의회 입법안 작성을 지원한다.

2016 규정심의회 일정

규정심의회 대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3 년 사이클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 1 차 연도(2013-14)	**대의원 선출**
2014 년 6 월 30 일	지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 RI 에 보고
제 2 차 연도(2014-15)	**입법안 제출**
2014 년 12 월 31 일	규정심의회 입법안 제출 마감일
2015 년 3 월 31 일	수정안 제출 마감일
제 3 차 연도(2015-16)	**규정심의회 참석**
2015 년 9 월 30 일	입법안 책자 출간

2015 년 8-12 월	로타리 연수회에서 규정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교육 (대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2016 년 2 월	클럽/지구의 ‘입법안 찬성 및 반대 의견서’ 제출 마감일
2016 년 4 월	2016 규정심의회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구체적인 일정은 차후에 결정)

2016 규정심의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RI 규정심의회 부서로 이메일 council_services@rotary.org로 문의해 주십시오.